

광주광역시서구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3년 12월 1일

제출자 : 이춘문 의원 외 3인

1. 수정이유

개정안의 부칙 중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규정(안 부칙 제2항)을 정비하여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통장의 연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기 위하여 안 부칙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시행일
- 통장의 위촉에 관한 특례
- 통·반장의 신분예 관한 경과조치
- 통장의 연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

수 정 안 대 비 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통·반장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(위촉된 지 2년 미만인) 통·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,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개시한다.</p> <p>③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민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통민 수의 5분의 10이상의 주민추천이 있어야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통장의 위촉에 관한 특례)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민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통민 수의 5분의 10이상의 추천에 의한다.</p> <p>③(통·반장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중인 통·반장은 제5조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</p> <p>④(통장의 연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통장의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그 통장이 최초로 위촉된 때부터 적용한다.</p>

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광주광역시서구통·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광주광역시서구통·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- ②(통장의 위촉에 관한 특례)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민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통민 수의 5분의 1이상의 추천에 의한다.
 - ③(통·반장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중인 통·반장은 제5조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 - ④(통장의 연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통장의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그 통장이 최초로 위촉된 때부터 적용한다.
-